

무 항생제 사육이 정착되기 위한 전제조건



이 인 호 국가항생제
내성관리사업 전문위원

2006년 1월 1일부터 EU에서 수의사의 처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장촉진용 항생제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정기 국정감사에서 신 퀴놀론 항균제의 대표주자인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 결과, 잔류허용한계치를 수배나 초과해서 검출되었다고 KBS-TV를 통해 방송됨으로써 항생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항생물질은 잘 쓰면 ‘약’ 이요, 잘못 쓰면 ‘독’이라는 것은 이미 재론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및 동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을 비롯한 국제기관에서는 정부주도로 동물로부터 식품을 통해서 내성균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인수공용 항균제를 비롯한 성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와 함께 신중사용(Prudent Uses)의 원칙을 준수해 나갈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에 부응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무 항생제 사육을 하는 우수농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 항생제 사육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육계사육에 있어서 무 항생제 사육이 육계농가들 다수에게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이에 따르는 전제조건으로 거론되는 문제점들이 시행착오과정을 거쳐서 해결되어야 한다.

항생물질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우리나라 국민들과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공영방송이나 유력 일간지에 축산물에서 항생물질이 검출되었다고만 보도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EU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항생물질의 사용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관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EU의 선례는 우리나라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

이 EU에서는 성장촉진용 항생물질(AGPs)의 단계적 사용금지와 전면금지의 시행과정에서 과사성 장염(NE)에 감수성을 나타내 이 질병의 예방에 크게 기여했던 항생물질의 사료첨가금지로 인해 과사성 장염의 발생이 증가되어 치료용 약제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폐사율이 증가되고, 일당 증체량이 감소되는 후유증을 현재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수치는 보여주고 있다.

또한 EU에서는 성장촉진용 항생물질의 사용을 수의사의 처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료에 첨가하는 것을 전면금지 시키면서 생균제, 효소제 및 약용식물(Essential Oils)을 비롯한 대체물질의 사용과 사양관리의 개선, 사료배합 기술의 향상 등으로 성장촉진용 항생물질의 사용금지로 인한 후유증을 시행착오과정을 거쳐서 극복해 나가고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머지않아 무 항생제 사육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EU의 육계농가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EU의 정책을 받아들여 사료첨가용 항생물질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려는 정책을 채택하려고 했으나, 일본 정부가 EU의 정책을 답습할 경우 축산에서 1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일본 과학사료협회의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자, 이를 받아들여 동물용 항생물질의 사용은 허락하고, 인수공용 항생물질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수의사처방에 의한 항생물질의 사용이 정착화되고 있는 EU와 일본에서도 성장촉진용 항생물질의 사용금지로 인한 후유증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EU나 일본보다 제반환경여건이 특출나게 나은 것도 없고, 질병의 상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수의사 처방제 도입에는 경제적 부담을 들어 생산자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면서 법적으로 수의사법에도 자가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EU와 같이 항생물질에 대한 내성률이 심각하고, 동물전용 엔로플록사신을 비롯한 잔

류물질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항생물질의 사료첨가를 전면 금지시킨다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현재도 성장촉진용 항생물질을 41종이나 사용하는 미국에서는 학자들이 성장촉진용 항생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EU와 같은 상황으로 미국의 축산을 대입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 본 결과, 미국이 EU를 따라잡아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대비책이 마련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국의 상황이 이러하거늘 ‘무 항생제 사육이 우리나라 육계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경제성 평가’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보고서가 발표된 사실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 항생제 사육의 정당성을 홍보해서 육계농가들의 공감대를 얻으려 하는지를 본인은 묻고 싶다.

또한 EU의 경우에서 보듯이 항생물질의 사용을 전면금지하면 이를 대체물질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현행의 ‘사료관리법 보조사료의 관련규정’에 의한 대체물질은 육계농가들에게 신뢰할 만한 효능을 만족시켜서 무 항생제 사육을 주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니요”다. 개정을 위한 공고가 나있는 현행의 보조사료는 판매업자들이 눈앞의 영업행위에만 관심이 있어 각종의 편법등록과 약사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과대 광고행위가 무법지대로 행해질 정도로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생균제를 비롯한 보조사료에 해당

되는 성분에 대해서 육계농가들이 직접 사용해 본 뒤에 옥석을 가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 현행법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를 육계농가들이 모두 감수해야 한다.

EU는 EFSA로부터 EU 25개 회원국가 모두에서 판매가 가능한 승인을 받으려면 항생물질의 허가 시에 제출해야 되는 방대한 실증자료에 버금가는 자료를 제출해서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EU국가가 원산지인 대체물질의 경우에 소수만이 EU의 인증마크를 받은 상태이고, 대다수는 인증마크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시험자료가 없어도 시·도에 형식적인 양식만 구비해서 신고만 하면 허가가 되고, 영터리의 자가 품질검사 증빙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법적요건을 충족시키는 우리나라의 허술한 법 관리체계 하에서 우리나라 육계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체 유평파아적으로 EU의 사례를 들면서 무 항생제 사육을 성장촉진용 항생물질의 내성을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재고되어야 한다.

항생물질의 오·남용으로 인한 축산물의 안전성 위협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소비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 소비자들의 공통된 경향이기 때문에 국제기관이 권장하는 ‘항생물질의 신중사용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원칙임은 틀림이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자가 진료에 의한 항생물질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

능해서 항생물질의 오·남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늘 안고 있으며, 항생물질을 자유로이 사용하고도 성장촉진용 항생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EU보다도 폐사율이 높은 것으로 비교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축산물 생산량과 배합사료 생산량 대비 항생물질 사용량이 주요 선진 축산 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공인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항생물질의 사용량을 줄여서 항생물질에 대한 지표세균의 내성률을 감소시키려는 압력을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계속해서 받음과 동시에 대안의 하나로서 무 항생제 사육이 현재보다도 더 강력하게 제기될 것이다.

특히,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무 항생제 사육에 대한 시범사업에 의한 내성률의 평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농림부에 어떠한 건의를 전달하게 될지를 지켜보아야 한다.

질병 상재지인 우리나라 축산현실에서 비록 일부 양축농가들이 무 항생제 사육에 성공한 사례가 있을지라도 대다수의 육계농가는 만약에 EU와 같이 무 항생제 사육을 할 경우를 가정하면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이를 극복하고 다시 정상적인 축산을 영위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육계농가들과 현장실정에 해박한 양계전문수의사 및 컨설턴

트들이 수궁하고 받아들일 만한 대안의 제시와 미비한 법적체제의 대폭적인 정비 없이 무조건적인 항생물질의 사용금지만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육계농가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어 능사가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EU의 사례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밀하게 정밀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연구용역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무 항생제 사육이 우리나라 육계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어떠한 득실을 가져다 주는지를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정밀 진단하여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어떠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가와 육계농가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보고서가 발간된 적이 없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각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사료관리법 보조사료 규정의 대폭적인 개정작업을 포함한 제반여건의 개선조치 선행 없이 무 항생제 사육을 대안으로서 주장하는 것은 육계농가들에게 이로 인한 피해를 모두 감수하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달콤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본인의 일관된 주장이다. 